## 폭행·모욕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6. 2019고정1468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신건호(기소), 문종배(공판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